

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제6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 1 ~ 5등급 대상자(인지지원등급 포함)를 우선적으로 인정기간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/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만료시까지로 기간을 정한다.

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.

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제7조(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. 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 전액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)

-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,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.
-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.
- ③ 다만,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 및 계약의 해제)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신원인수 방법

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본 센터

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

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

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